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7. 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7.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7.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정원 증인함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제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총 정원 : 1,897명
 - 집행기관 : 1,939명 → 1,872명(△67)
 - 의회 : 25명
- 정원 증감내역

- 증원 : 5명(사회복지직 9급)
- 감축 : 72명(재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 감축인원)

○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

기 관 별	당 초	변 경	증·감
계	1,964명	1,897명	△67
집 행 기 관	1,939명	1,872명	△67
의 회	25명	25명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명 감원 근거는 ○ 사회복지직 5명은 언제 채용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금년 7. 31일 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계획임 ○ 2001년 5월에 승인되어 조레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7.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정원 승인함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제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총 정원 : 1,897명
 - 집행기관 : 1,939명 → 1,872명(△67)
 - 의 회 : 25명
- 정원 증감내역
 - 증원 : 5명(사회복지직 9급)
 - 감축 : 72명(제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 감축인원)
-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

기 관 별	당 초	변 경	증·감
계	1,964명	1,897명	△67
집 행 기 관	1,939명	1,872명	△67
의 회	25명	25명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892명”을 “1,897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867명”을 “1,872명”으로 한다.

조례 제1773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의 제2조제1항중 “2000년 6월 30일”을 “2001년 7월 31일”로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7월 31일”로 「표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 “2,033명”을 “1,96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009명”을 “1,93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을 “25명”으로 하며 「표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 “1,964명”을 “1,8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939명”을 “1,872명”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892</u>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67</u>명</p> <p>2. (생략)</p> <p>부 칙<2000. 9. 25 조례 제1773호></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표1」을, 2001년 6월 30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p>	<p>제2조(정원) <u>1,897</u>.....</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72</u>명</p> <p>2. (현행과 같음)</p> <p>부 칙(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u>2001년 7월 31일</u>.....<u>2002년 7월 31일</u>.....</p>																
<p>[표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p>	<p>[표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u>2,033</u>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u>2,009</u>명</td> </tr> <tr> <td>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td> <td><u>24</u>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2,033</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u>2,009</u> 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u>24</u> 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u>1,964</u>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u>1,939</u>명</td> </tr> <tr> <td>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td> <td><u>25</u>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1,964</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u>1,939</u> 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u>25</u> 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2,033</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u>2,009</u> 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u>24</u> 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1,964</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u>1,939</u> 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u>25</u> 명																
<p>[표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p>	<p>[표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u>1,964</u>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u>1,939</u>명</td> </tr> <tr> <td>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td> <td><u>25</u>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1,964</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u>1,939</u> 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u>25</u> 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u>1,897</u>명</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u>1,872</u>명</td> </tr> <tr> <td>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td> <td><u>25</u>명</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1,897</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u>1,872</u> 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u>25</u> 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1,964</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u>1,939</u> 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u>25</u> 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1,897</u>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u>1,872</u> 명																
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u>25</u> 명																
<p>②제1항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p>	<p>②제1항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p>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1」,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②(생략)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삭제>

①(현행과 같음)